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26885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2688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6. 4. 14 선고 2005나535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5. 4. 19 선고 2004가단9005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B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6. 4. 14. 선고 2005나5355 판결

판결선고 2006. 11.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7. 11. 28. 카드론 약정에 따라 C에게 20,000,000원을 이율 연 12.5%, 지연손해금율 연 18%, 변제기 1999. 11. 28.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약정에 의하면 이자 지급시기는 카드론 이용일부터 1월 이내 또는 이자 입금일 익일부터 1월 이내로 되어 있고, 카드론 이용금액 및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용금액 잔액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이자 지급만 지체한 때에는 지체일부터 1개월간 지급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C은 1999. 4. 7.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그 다음날부터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1999. 4. 8.부터 변제기인 1999. 11. 28.까지 매월 발생하는 연 1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위 각 이자에 대한 연 18%의 비율에 의한 1개월간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변제기 다음날인 1999. 11. 29.부터 2004. 10. 12.까지 원금에 대한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산정할 경우 그 합계액이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19,442,731원에 이를 수 있음이 계산상 분명하고, 거기에 이자 및 지연손해금 산정과 관련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한 판단

원고와 C 사이의 카드론 약정에 적용되는 D여신거래기본약관(갑 제8호증) 제7조 제2항은 채무자가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는데, 이 경우 원고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 3 영업일 전까지 채무이행 지체 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만일 기한의 이익 상실일 3 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 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C이 이자 지급을 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 비로소 C이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대출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C이 1999. 4. 7.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그 다음날부터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약관에 따라 1999. 4. 8. 이후 변제기전까지 사이에 C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C의 대출금채무의 소멸시효는 변제기로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한 뒤, 이와 달리 1999. 6. 8.경 또는 1999. 7. 8.경 C이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그 때로부터 대출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그 보증한도를 26,000,000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사실심의 증거 취사에 관하여 이를 반대로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 김지형 주심 대법관 전수안